

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2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1월 1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2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국한된 학자금 대여대상을 환경미화원을 추가하고,
조문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·운용
조례”로 변경
- 학자금 대여기금의 조성재원을 “일반회계”에서 “일반회계 출연금”으로
수정하고, 기타 수입금 신설 (안 제2조제1항제1호, 제3호)
-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수입, 지출을
담당하는 공무원을 “기금 회계직 공무원”에서 “회계관계공무원”으로,
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, 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
으로 변경(안 제4조)
- 학자금 대여대상을 환경미화원 본인도 포함 (안 제5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